

명의개서신청안내문

콘도 및 요트회원권은 양도·양수·상속 등이 가능하며, 이 경우 당사가 정하는 소정의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【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】

양도인과 양수인은 명의개서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/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에 계약자 (양도인, 양수인)를 제외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(*) 처리된 서류만 접수 가능.

제3자 주민번호 노출 시 명의개서 접수 불가 - 2014. 8. 7.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름

● 구비서류 (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 발급유효기간 - 1개월 이내 발급 件에 한함)

구분	양도자	양수자
개인	· 인감증명서 1부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회원카드(기존발행분 전체), 회원증서 반납 → 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후 접수	· 인감증명서 1부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등기권리증 사본 1부 (공유제에 한함) · 객실등기부등본 제출용 1부 (공유제에 한함) · 개인회원카드발급 신청서 1부 (당사양식) ·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(당사양식) · 양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1부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.
법인	·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말소사항포함) · 법인인감증명서 1부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· 회원카드(기존발행분 전체), 회원증서 반납 → 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후 접수	·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말소사항포함) · 법인인감증명서 1부 · 사업자등록증 1부 · 등기권리증 사본 1부 (공유제에 한함) · 객실등기부등본 제출용 1부 (공유제에 한함) · 법인회원카드발급 신청서 1부 (당사양식) · 양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1부 - 등기임원, 가족관계증명서 등.
공통서류	· 명의개서 신청서 1부 (당사양식) · 증여계약서 사본 1부 (자율양식) · 실거래금액 1천만원 초과시 매매금액별 수입인지 구비 필수	
절차	· 접수방법 : 등기우편접수 ▶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7층 (시그니처타워 서관) 금호리조트(주) 분양사업팀 (우) 04542 · 명의개서 수수료 입금계좌 (양수자名으로 입금요망) ▶ KEB하나은행 : 101-890057-81704, 예금주: 금호리조트(주) · 명의개서 수수료 ▶ 상속, 증여 : 396,000원 (VAT 포함) · 회원제 물건의 등기제 전환시 당사 부담	

※ 양도자 상품에서 특약사항(골프 등)은 양도·양수 되지 않습니다.

※ 개인 가족회원의 경우 본인 포함 5인까지 회원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(가족회원증명서류: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)

● 취득신고

회원제 회원권을 취득하신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콘도소재지 관할 과세관청 세무과에

자진신고, 납부 하셔야 합니다.

통영: 통영시청 055-650-4313 / 화순: 화순군청 061-379-3364 / 설악: 속초시청 033-639-2154 / 제주: 서귀포시청 064-760-2314